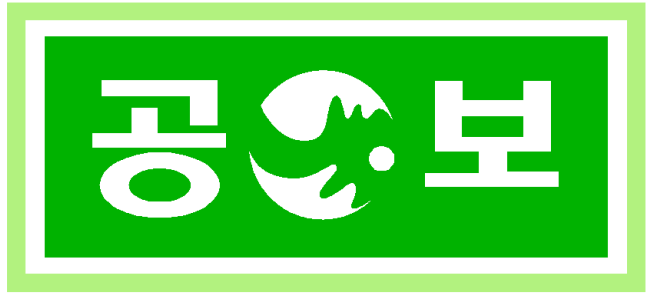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49 호 2013. 10. 21(월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71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72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4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877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6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171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0월 2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4길 2외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6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10. 2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서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78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4길 2(양정동)	2013-10-21	양정이민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이며 현재 이 지역 대표 이름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2-29	
2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71	울산광역시 북구 화정1길 33-6(중산동)	2013-10-21	기존 마을 자연부락 명칭인 화정마을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3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0-6	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1-3(화봉동)	2013-10-21	화동은 화봉의 옛 지명이며 산세가 갑자기 높아진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280 9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5길 14(진장동)	2013-10-21	옛 지명이며 현재 도로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5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-17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1길 3(양정동)	2013-10-21	예쁜 부둣안정동은 양정양동 치전마을과 같으나 위치가 다르므로 다른 이름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38 7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9길 10(진장동)	2013-10-21	옛 지명이며 현재 도로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4-12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5길 23(연암동)	2013-10-21	고려종렬왕 때 이곳 부위에서 상소려운 원종을 수놓은 듯 피어나 백암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암으로 불리게 됨 현재 도로명상명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8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-72	울산광역시 북구 원연암2길 48(연암동)	2013-10-21	원연에서 아래쪽에 있다 하여 붙여졌던 연암이라 부르던 원래 도로명 사용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지번 추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- 172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0월 21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새장터1길 12-5외 4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6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10. 2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중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1길 12-5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76-9	2013-10-21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1길 12-9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76-5	2013-10-21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94	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242-1	2013-10-21	건축물 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정지1길 13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702	2013-10-21	지번합병	
5	울산광역시 북구 단사동 276	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2길 51	2013-10-21	건물군 이용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877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3년 10월 16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1. 개정이유**

-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자치단체별 사무의 종류,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격차가 심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안전행정부 훈령 제12호, 2013.07.29)을 개정하여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을 설정함

**2. 주요내용**

- 월액여비 지급 한도 설정  
 (현행)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액여비 월지급한도액을 자치단체장이 정함  
 (개정) 월 138,000원을 한도로 하되,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50%까지 가산을 허용함

**3. 근거법규**
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, 2013.07.29.)

**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**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0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## 6. 제출처

- 가. 주 소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
- 나. 전화번호: 052-241-7212, 팩스번호: 052-241-7209

## 7. 참고사항

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**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월 138,000원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%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.
-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.

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</b> 상시출장 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</p>	<p><b>제1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</b> ----- -----월 138,000원 ----- ----- 다만,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원 기준액의 50%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</p>